

특집/'96 동물검역 업무계획

'96 동물검역 업무계획

김 옥 경

1. 서 론

검역의 의미는 국가간의 검역물 이동에 대하여 조사, 검사, 소독 등 일반적인 방역조치 이외에 반드시 지역이나 시설로서 다른 물건과 격리(Isolation)하고, 통제하여야 한다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 일반적인 검사의 의미와는 완전히 구별되는 것이다.

국립동물검역소에서 검역을 실시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수출동물 및 축산물에 대하여 가축방역으로 안전한 동물과 위생적인 축산물을 수출함으로써 국익증대와 국제교역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며, 수입동물 및 축산물에 대하여 엄격하게 검역을 실시함으로써 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을 사전에 방지하여 국내 양축기반을 보호하고, 수입축산물에 대하여 잔류물질검사 등 철저한 위생검사로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동물 및 축산물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악성가축전염병 유입으로 국내 축산업에 치명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힐 수 있고 또한 수입축산물중 항생물질, 합성항균제, 농약 등이 잔류되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축산물을 사람이 식용으로 섭취할 경우 질병에 대한 저항성 약화, 발암작용, 만성독성 등 국민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이러한 유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본질적인 검역의 중요성 뿐만아니라 WTO/SPS 협정으로 세계각국은 통상정책을 검역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검역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2. 검역의 여건변화와 문제점

가. 검역의 여건변화

1986년 UR 농산물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우리나라에서는 UR타결시 국내농축산물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입개방화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수입개방에 의한 변화로 교역국가수는 '85년 32개국에서 '95년 79개국(147% 증가)으로 다변화되었으며, 검역품목은 '85년 99품목에서 '95년 259품목(162% 증가)으로 다양화되었고, 검역물량은 전수기준으로 '85년 15,691건에서 '95년 46,390건으로 증가하여 왔다.

'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면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협정문(SPS :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이 발효됨에 따라 수입개방에 의한 변화와 함께 검역의 환경이 많이 변화하게 되었다. SPS협정문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검역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수입금지지역을 국가개념에서 지역개념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해잔류물질검사 등 위생검사는 국제식품규

격위원회(CODEX)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국내산과 수입품에 차별검사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입규제조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학적 위험 평가에 따라 적정보호수준을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검역의 문제점

수입이 개방화되면서 교역국의 다변화, 검역품목의 다양화, 검역물량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전염병 검사항목 확대('90년 21항목→'96년 60항목) 및 잔류물질 검사항목 확대('90년 1항목→'96년 56항목)에 따른 정밀검사인력 등 검역요원이 절대부족한 실정이고, 수입금지지역의 국가개념에서 지역개념으로 전환함에 따라 악성가축전염병 발생국가내의 비발생지역으로부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을 수입이 가능하게 되어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는 국내 비발생 질병에 대한 진단능력을 확보하여야 하나 미흡한 실정이며, 육류수출국가에서 사용하는 각종 유해물질에 대한 분석기술도 완전히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수입검역물을 효과적이고 완벽하게 통제, 관리할 수 있는 검역시설과 정밀검사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실험실 등 검역시설이 부족하고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및 유해잔류물질에 대하여 신속정확하게 진단, 분석할 수 있는 첨단 검사장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수입제한(UR 협상이전)에서 수입단계적 확대(UR 협상) 및 수입자유화(WTO 출범)로 진행되어 오면서 이제 세계 각국은 경쟁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는 수출국의 가축전염병 발생 및 위생상황의 검역정보를 신속히 입수하여 대처할 수 있는 검역정보 수입기능이 취약한 실정이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수입금지지역을 해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험평가에 준하는 수입금지 해제절차를 운용하고 있으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위험평가 제도가 개발되어 있지 않으며, 검역방법이나 절차에서도 위험도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모순점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수입동물에 있어서 검역업무와 국내 가축방역업무가 서로 연계되지 않아 통관후 수입동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3. 검역기능 발전대책 추진

가. 1단계 조기완료

UR 농산물협상 진전과 수입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립동물검역소에서는 동물검역기능강화 5개년 계획('92~'96)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나 '95년 1월 WTO 출범과 함께 SPS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동물검역기능 강화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1년 단축하여 동 사업을 완료하였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투자금액으로 계획 10,800백만원에서 실적 10,200백만원으로 계획대비 94.4%의 실적을 올려 선진국 검역수준과 비교하여 볼 때 시설면에서 67%, 장비면에서 88%, 검역기술능력면에서 51%, 인력보장면에서 45% 정도의 수준을 달성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나. 2단계 추진계획

1단계 검역기능 발전대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완전개방에 대비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검역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역시설 확충 및 현대화, 첨단정밀검사장비 보강, 검역기술훈련 강화, 검역전산망 구축 및 검역홍보 등에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간 총 211억원을 투자하는 2단계 검역기능 발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4. '96 동물검역 주요 업무계획

가. 검역시설 및 장비확보

서울지소 관할 수입동물 검역계류장(불노리, 당하리)에 위험지역산 동물 특수검역시설과 축산물 소독창고를 신축하여 검역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수입육류 등 축산물이 대부분 수입되고 있는 부산지역에 정밀검사 실험실을 신축하여 현장검사에서부터 정밀검사에 이르기까지 신속한 검역, 검

사업무를 수행하여 검역이나 검사지연에 따른 통상 마찰에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지역에 동물검역 시설을 확보하여, 이 지역으로 수입되는 동물의 검역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며, 수입동물 물량이 많은 서울, 부산지역의 계류장에는 출입통제시설 및 소독실 등을 확보하여 계류장내 출입자로 인한 전염병 전파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시설투자비 : 3, 679백만원).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진단 및 유해잔류물질 분석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자동마이크로플레이트 분석기, 면역염색기, 시료자동주입장치, 질소농축기 등 34종의 첨단 정밀검사장비를 금년에 확보할 계획이다(장비구입비 : 1, 147백만원).

검역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검역정보 입수, 위험도에 따른 검역물 분류, 입상시부터 최종검역 완료시까지 체계적인 검역물 관리, 시료채취자동 컴퓨터시스템(AIIS)체계운용 등의 검역전산 프로그램 활용과 전산장비구입 등 검역전산망 구축을 위하여 223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나. 검역기술훈련

국내외 검역기술훈련으로 전염병 및 위생검사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본방향은 선진외국의 첨단기술 습득으로 소수정예화하고, 국내 전문기관의 위탁교육 및 외국 연수자의 전달교육으로 검역관 전체의 기술향상을 도모할 것이다.

국외 훈련으로는 미생물학적 검사 등 전염병 진단 기술과 잔류물질분석 등 위생검사 기술연수, 국제기구의 조직, 기능 및 국제기준 연수를 위하여 미국, 프랑스 등 12개국에 23명을 교육시킬 계획이다(국외 훈련비 : 146백만원).

국내훈련으로는 전염병 진단 및 위생검사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수의과학연구소 등에 117명을 교육시킬 계획이다(국내훈련비 : 31백만원).

다. 검역업무 강화

금년에는 WTO출범 2년차로 수입물량 증가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검역물 선별 및 수입위생조건 이행사항 확인 등 역학조사를 철저히 하고, 부두, CY장, 보관창고(계류장) 등에서 현물검사를 강화할 것이며, 특히 정밀검사분야에서 전염병 검사는 수포성구내염, 렙토스피라병, 닭전염성기관염, 닭전염성F낭병을 추가하여 '95년 48 항목에서 '96년 60항목으로 확대하여 검사할 것이며, 잔류물질검사 등 위생검사는 '95년 계획물량 14, 089건에서 '96년 17, 230건으로 확대하여 검사함은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신규 입안예고증인 농약 52종, 항생물질 등 4종에 대하여 검사방법정립 등으로 시행에 대비할 것이다.

라. 검역정보수집 강화

WTO 출범에 따른 각국의 대응준비조사 뿐만 아니라 OIE, CODEX 등 검역관련 국제회의에 적극참여하여 우리의 입장반영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신규 수입허용지역 및 주요교역국의 가축방역 및 위생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검역대책수립에 적극 활용할 것이다.

마. 검역제도 개선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 세부검역규정인 “검역증 가축전염병 이환동물과 동거한 동물관리요령”, “수입동물검역계류장 사용계획서 제출요령”, “수출입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되도록 개정할 것이며, 수입위생조건은 품목별, 국가별로 세분화하여 관련품목의 문제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바. 검역인력 보강

검역물 교역국의 다변화, 검역품목의 다양화, 검역물량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전염병 및 위생검사 전문가 양성, 검역관련 통상마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95. 8. 25일 총무처에 검역인력 70명 증원요청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